

해양수산동향

Vol. 1256

2008. 4. 3

책임연구원 유미림

TEL 2105-4954

E-mail mirim-u@kmi.re.kr

‘석도’는 ‘독도’다 일본의 ‘석도=독도’설 부인에 대한 반박

- 01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해 왔는데, 일본이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황성신문에서 찾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석도=독도’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 02 황성신문에서는 대한제국 칙령에 나온 내용,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라고 한 내용 뒤에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 합쳐 200여리라” 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음
- 03 일본은 신문에서 거리 운운한 것을 두고 이는 울릉군의 관할거리를 말한 것이라고 함. 따라서 석도는 울릉군의 관할범위 안에 포함되는 섬이 아니므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함
- 04 그러나 황성신문에서 말한 동서 60리, 남북 40리 운운은 그 동안 울릉도를 수토했던 자들이 기록한 울릉도의 범위와 거의 유사하므로 이는 울릉도의 범위 내지 거리를 말한 것이며 관할범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임



대한제국 칙령 41호와 ‘석도’의 등장

우리나라는 그 동안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산인쥬오신포(山陰中央新報)」가 이를 무너뜨릴 만한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석도=독도’ 논쟁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27일 관보에 실린 칙령 41호는 울릉도의 관제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2조에서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그 동안 문헌상에 등장하던 우산도나 독도라는 말 대신 ‘석도’가 칙령에 처음 등장함으로써 한일 양국간에는 칙령에서의 석도가 과연 독도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칙령 41호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여기 나오는 ‘석도’ 역시 그 동안의 ‘우산도-독도’ 논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 칙령은 일본의 울릉도 침탈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울릉도의 자원과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선 국토의 권역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낀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1881년 5월 강원감사의 보고를 접한 정부는 울릉도에서 일본인에 의한 무단 벌목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본 외무성에 서계를 보내 항의하는 한편, 1882년 4월 이규원을 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의 형세를 살피게 하였다. 이어 조선은 울릉도 개척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8월에는 울릉도 도장을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자연히 울릉도에는 내륙에서 유입되어 온 주민이 증가함과 동시에 일본인의 유입도 증가하였다.¹⁾ 울릉도의 일본인은 목재를 밀반출하는가 하면 도민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규수를 희롱하는 등 작폐가 날로 심해졌다. 더구나 러시아에 벌목권과 양목권이 허가되면서 울릉도는 러·일간의 각축장이 되어 갔는데 여기서 생기는 갈등과 마찰을 도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1890년대 중반부터 관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칙령 41호가 나오기 전인 1898년 5월 26일,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이라는 칙령 12호를 반포하여 도감을 판임관 대우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명목상의 편입에 그쳤으므로 실질적인 행정정비는 1900년 5월 시찰위원 우용정의 조사 이후 이루어졌다.

우용정은 감리서 주사 김면수, 해관 세무사 프랑스인 라쁘테(羅保得), 일본 부영사 아카즈카 마사스케(赤塚正輔), 일본 경부(警部 : 한국의 경위 상당) 와타나베 다카지로(渡邊鷹治郎), 우리나라 보호 순



1) 개척령 이후 1883년 4월과 7월에 처음으로 울릉도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모두 16호 54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척령 이전에 상당수의 조선인(170명 이상)과 일본인(78명)이 울릉도에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이규원은 기록하고 있다.

김 신태현, 김형욱, 일본 보호 순검 두 사람과 함께 입도하였다. 그리고 우용정은 6월 1일부터 5일에 걸쳐 도감과 주민, 일본인을 상대로 심문 조사를 하였다.

우용정의 시찰목적은 울릉도의 벌목 현황과 일본인에 의한 피해 현황, 개척 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우용정은 선박의 구입과 관제 개편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았다. 이 가운데 칙령 41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관제 개편이다.

칙령 41호의 반포와 내용

칙령 41호는 전부 6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는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안에 편입하고 군등(郡等)은 5등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울릉도민 가운데 임명하던 도감을 중앙에서 파견하는 군수로 대체하고 직원을 뒀으로써 지방관으로서의 체통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석도(독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제2조이다.

칙령에 의하면, 울도 군수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 석도 구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칙령이 지니는 의미는 울릉도를 군(郡)으로 하여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제로 편입하되, 그 관할 구역도 함께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때 관할 구역을 울릉도라고 하지 않고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라고 하였다. 관할 구역에 죽도와 석도를 포함하여 언급한 것은 울릉도는 물론이고 이들 지역까지 조선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이다. 그런데 이때 석도(독도)라는 호칭이 나온 것이 양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칙령에서 말한 석도가 오늘날의 관음도를 일컫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한국 학자들은 조선 시대에 우산도로 지칭되던 것이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오면서 석도로 불리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석도=독도’설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런 주장을 수긍하지 않고 있었는데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다시금 ‘석도=독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일본의 논거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한국측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가 발음의 유사성만으로는 석도가 독도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대체로 리안코섬 등으로 불린 현재의 죽도를 한국측에서 독도라고 부른 것은 1904년 이후이다”²⁾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석도=독도’설을 구체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일본은 최근에 석도가 독도임을 부정할 만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보도하였다. 일본 시마네 지역의 「산인쥬오심포」는 2008년 2월 22일자 기사에서 “이제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주장은 무너진다”



2) 「山陰中央新報」, “發信竹島, 2부, 勅令對閣議決定,(6) 無主先占” 2005년 8월 28일자 기사.

고 보도하였다.

「산인추오실포」가 독도의 한국령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일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그가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는 다름 아닌 조선의 황성신문이었다. 「산인추오실포」 기사에 의하면,

“자료는 대한제국 시대의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 기사. 일본이 죽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가 낸 것인데, 여기에 석도가 독도라는 한국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칙령에서 한국의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한 경위가 써 있다. (황성신문의) 기사는 ‘울도군이 관할하는 섬은 울릉도와 죽도(현재의 竹嶼)와 석도. 동서 60리, 남북 40리’라고 되어 있다. …… 현재의 죽도(독도)는 울릉도의 남동쪽 92킬로에 있으므로 숫자가 군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한국측 주장은 무너진다”고 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일본인의 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상기의 신문(황성신문 : 인용자) 기사에서는 울릉도의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 석도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동서가 60리, 남북이 40리라는 관할범위가 나타나 있으므로 죽도가 이 범위 안인지 범위 밖인지로 ‘석도’가 죽도(독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동서 60리, 남북 40리’에서는 죽도가 영역 밖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석도는 이 붉은 선의 안측에 존재하는 섬이므로 당연히 석도와 죽도가 별개라는 것이 명백합니다.”³⁾

위의 글은 황성신문 기사에 나온 ‘동서 60리, 남북 40리’를 울릉도의 관할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인추오실포」도 이 기사를 그대로 믿어 ‘숫자가 (울도)군의 범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근거로 제시한 황성신문 기사

문제의 황성신문 기사를 보면, ‘울도군의 배치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쓰여 있다.⁴⁾

“통감부에서 내부⁵⁾에 알리되, 강원도 삼척군 관하 소재의 울릉도에 소속하는 도서(島嶼)와



3) <http://ameblo.jp/nidanosuke> (杉野洋明: 極東亞細亞研究所)

4) 인용문은 필자가 현대문의 어법에 맞게 고친 것임.

5) 내부: 대한제국 시대의 정치체제는 고종황제가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등 3권은 물론, 군통수권과 기타 모든 절대권한을 장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06년은 이미 일본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어 통감부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 따라서 정부조직인 내부 역시 통감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군청이 처음 설치된 연월을 설명하라고 하였다. 이에 회답하되, 광무 2년(1898) 5월 20일에 울릉도감으로 설립하였다가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하였으니,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고 하였다더라.”

이 기사는 통감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내부의 회답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울릉도 부속도서와 군청의 설치 연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한 뒤에 울릉도의 현황을 알아볼 목적으로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내부의 회답에 칙령 41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1900년의 칙령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위의 기사에서 “광무 4년(1900) 10월 25일에 정부 회의를 거쳤다”고 한 것은 바로 칙령이 절차를 밟았던 사실을 말하며, “군수를 배치하였으니,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칙령 41호의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황성신문 기사에는 칙령 41호에는 없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다. 즉,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일본은 현재 이 거리관계 언급을 빌미로 독도가 한국령임을 부정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부정하는 근거는 황성신문에서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라고 한 다음에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고 한 것은 울릉군의 관할거리를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 합쳐 200여리”가 울릉군이 관할하는 거리이니, 석도(독도)는 울릉도의 관할 범위 안에 포함되는 섬이 아니므로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문장 구조를 엄밀히 따져보면 성립되지 않는다. 기사에서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라고 할 때 이 글의 주어는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이며, 그 대상은 죽도와 석도가 된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는 내용은 위 문장과는 별개의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군이 소관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로서 동서가 60리, 남북이 40리이므로 합쳐 200여리라고 한다”⁶⁾고 해석하여, 원래 황성신문의 기사와는 약간 다르게 해석하였다.

즉 해석된 일본어 문장에는 ‘죽도와 석도로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원 문장이 ‘죽도와 석도요’



6) 참고로 블로그에 있는 일본어 원문을 인용한다.

『鬱島郡の配置顛末』

「統監府から内部に公照された江原道三陟郡管下に所在する鬱陵島の所属島嶼と郡廳設始月を申明せよとの故に答酬され、光武二年五月二十日に鬱陵島統監として設證され、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に政府會議を經由して郡守を配置したが、郡廳は台霞洞に置き、該郡所管島はチック島と石島で、東西が六十里で南北が四十里なので、合せて二百余里だという」(황성신문 기사내용과 약간 다르게 해석하였음).

라고 되어 있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죽도와 석도요’라고 하면 단락이 끝나는 형식이 되지만, ‘죽도와 석도로서’라고 하면,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여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의 주어를 ‘이 군이 관할하는 섬’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울도군의 관할 범위를 ‘동서 60리, 남북 40리, 합쳐 200리’로 한정시킨 것이다. 그러나 ‘죽도와 석도요’라고 한 것은 일단 위의 주어 ‘그 군이 소관하는 섬은’을 받고, 그로써 끝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뒤에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는 글은 이 글에서는 주어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새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울릉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울릉도의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게 내용상으로도 맞는데 이는 아래에서 논증한다.

한국이 제시하는 ‘석도=독도’ 논거

칙령에서의 석도가 독도라는 입증논리를 한국 학자들은 ‘석도’의 어원에서 찾고 있다. 즉 당시 울릉도를 왕래하던 전라남도⁷⁾의 연해민의 말에서 ‘석도’라는 말의 어원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 연해민들은 우산도에 관한 문헌을 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므로 지금의 독도에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독섬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⁸⁾ 그리고 그 독섬 내지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석도라는 것이다. 전라도 방언에서는 ‘돌(石)’을 거의가 ‘독’으로 부르거나, 일부 지방에서는 ‘돌’과 ‘독’을 섞어 부르고 있다⁹⁾는 연구결과를 가져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953년에 최남선은 서울신문에 ‘울릉도와 독도’라는 글을 연재하였다. 여기서 그는 울릉도 주변에 10여개의 부속 섬이 있다고 보았다. 북쪽에 공암, 동북쪽에 관음도(觀音島), 동쪽에 죽서(竹嶼)가 주요한 섬으로 가까이 있고, 동남으로 훨씬 떨어진 해상에 두 개의 주도(主島)와 여러 개의 작은 섬이 한 바닷가에 깔려 있다고 했다. 최남선이 말한 ‘동남으로 훨씬 떨어진 해상에 있다는 두 개의 섬’이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 최남선은 “그것은 고대에는 가지도로 불렸으나 근세에는 그곳 거주민 사이에 섬모양이 ‘독(甕)’과 같다 하여 보통 ‘독섬’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래 ‘독도’라는 자는 ‘독’의 취음일 뿐이요 ‘독’의 글자 의미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¹⁰⁾고 하였다. 이는 ‘독도’라는 말이 ‘독섬’에서 온 것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독섬 내지 돌섬은 ‘석도’뿐만 아니라 ‘독도’의 어원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7) 울릉도에 호남인이 가장 많이 왕래한다는 사실은 이규원의 보고에도 나타난다. 『고종실록』 고종 19년 6월 5일.

8)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2007, p. 199.

9) 小倉進平, 『朝鮮語方言の研究』(上) 岩波書店, 1944, pp. 218~219; 송병기, 2007, p. 199에서 재인용.

10) 최남선, “울릉도와 독도”, 『신석호 전집』, 1953, pp. 696~697.

결과적으로 석도는 독도(독섬)를 문어체로 표현한 것일 뿐이며, 또한 독도는 독섬 내지 독섬의 발음과 합치되므로 취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그 동안 한국측에서 제시한 ‘석도=독도’설의 근거였다.

이런 주장은 현재까지도 계승되어, “석도를 혼동하면 ‘독섬’, ‘독섬’이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석도는 바로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거나, 지금도 울릉도민들은 독도를 ‘독섬’ 혹은 ‘독섬’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1900년 당시 우용정의 울릉도 조사를 반영하여 독섬 내지 독섬이 석도로 한역(漢譯)되어 결국에는 관제편성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¹¹⁾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성립된다.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도 용인되고 있다. 오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는 “‘석도=우산도’ 즉 ‘석도=독도’인 것이다. 왜냐하면, ‘석도=관음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음도는 일부러 칙령을 내려 행정관할구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행정조치가 필요하려면, 지리적으로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¹²⁾고 하여 관음도가 석도가 될 수 없는 근거를 들어 석도가 독도임을 입증하고 있다.

황성신문에서 말한 ‘거리’는 울릉도의 거리를 의미

황성신문 기사에서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이 군이 관할하는 섬은 죽도와 석도요”라고 한 것이 울도군에 대한 설명임은 군이 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동서가 60리요 남북이 40리니 합쳐 200여리’라고 한 부분이 일본의 주장대로 울도군의 관할범위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울릉도의 거리를 말한 것인가.

일본 신문은 “기사는 울릉도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군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사원의 말을 인용한 뒤에,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숫자는 울릉도의 크기인 동서 10km, 남북 9.5km와도 다르기 때문에 가령 한국측이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와도 설득력이 없을 듯하다”고 하였다. 즉 숫자는 울릉도의 크기가 아니라 관할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일본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것은 관할 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릉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울릉도의 범위’라고 하는 것과 ‘울릉군의 관할범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일본은 이 숫자가 울릉도의 크기인 동서 10km, 남북 9.5km와도 다르기 때문에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시대의 표기방식으로서 오늘날의 거리측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11) 송병기,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출판부, 2007, pp. 201~202.

12) 大西俊輝, 권오엽, 권정 옮김, 『獨島』, 제이앤씨, 2004, pp. 81~89.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즉 황성신문에서 말한 울릉도의 크기가 일본이 말하는 동서 10km, 남북 9.5km¹³⁾라는 숫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황성신문에서 말한 거리관계는 조선시대의 거리 개념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황성신문에서 말한 거리는 바로 울릉도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의 숫자가 현재 알려진 울릉도의 크기와 큰 오차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기록한 울릉도의 거리와 대조해 보면 입증될 것이다.

조선시대에 울릉도를 수토한 자들은 대부분 거리관계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를테면, 숙종 연간 울릉도를 수토했던 장한상은 “남북은 70리요, 동서는 60리, 둘레는 150~160리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동 시대인 박세당은 둘레가 불과 100여리라고 하였다. 월송 만호 김창윤(金昌胤)의 수토기록(정조 10년)에는, “섬 전체의 둘레가 120여리는 됴 직했고 남북으로 70~80리, 동서로 60~70리”라고 되어 있다. 한창국(정조 18년) 역시 “남북이 70~80리 남짓에, 동서가 50~60리 남짓”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규원은 둘레는 140~150리라고 보았고, 김정호는 “둘레는 200여리, 동서 70여리, 남북 50여리”라고 하여¹⁴⁾ 저마다 울릉도의 거리관계 내지 둘레를 말하였다.

이들 기록으로 보면 울릉도의 둘레나 동서남북의 거리 기술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황성신문에도 역시 거리관계가 나오는데 이는 기묘하게도 김정호가 기술한 거리관계에 가깝다. 김정호는 ‘(울릉도의) 동서는 70리, 남북은 50리, 둘레는 200리’라고 했는데, 황성신문에는 ‘동서는 60리, 남북은 40리, 둘레는 200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기록 간에 동서남북으로 10리 정도의 편차가 있을 뿐이다. 더구나 수토관들이 울릉도의 지리적 사실을 기록한 것과 지리학자인 김정호가 기록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사실적이겠는가. 그런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황성신문의 기사는 김정호의 기록과 가장 유사하다. 김창윤이나 장한상, 한창국의 기록도 동서남북 거리에 있어서는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둘레 면에서는 오차가 있는 데 비해, 김정호의 기록과 황성신문의 기록은 둘레에 관한 한 유일하게 같다. 김정호의 기록이 울릉도에 관한 거리관계이듯이 황성신문의 리수(里數) 역시 울릉도의 거리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황성신문에서 말한 ‘동서 60리, 남북이 40리, 합쳐 200여리’는 바로 울릉도에 관해 말한 것이지 일본이 주장하듯이 울릉군의 관할 범위를 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3) 현재 울릉도에 관하여 행정지도상에는 동서 11.426km(약 28리), 남북 10.73km(약 26리), 둘레는 56.5km(약 180리)로 되어 있다.

14) 김정호, 『대동지지』 8, 강원도편 울진.

향후 기사가 나오게 된 경위 연구가 필요

독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구한말까지 계속 등장한 것은 우산도였다. 이는 황성신문의 1899년 기사로도 증명된다. 황성신문 9월 23일자 기사에는 “울진의 동해에 한 섬이 있으니, 울릉이라 한다. 그 부속한 작은 여섯 개의 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산도와 죽도이니, 「대한지지」에 울릉도는 옛 우산국이라 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죽도는 오늘날의 죽서이고,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만 해도 여전히 우산도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일 년도 안 돼 칙령 41호에는 우산도 대신 석도가 등장하게 되었을까?

그 동안 문헌에서는 우산도가 일관되게 등장했다. 1882년 고종이 이규원과 대화를 나눌 때도 우산도가 등장하였고, 1899년의 「여재촬요(輿載撮要)」에도 우산도가 등장하였다. 그러던 것이 1년 만에 ‘우산도’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에 ‘석도’가 등장했다. 이는 1899년과 1900년 사이에 우산도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있었던 울릉도 관련 사건이나 변화를 보자면, 1899년 말부터 1900년 5월에 걸쳐 논의되던 울릉도 관제 개편과 그에 따른 6월의 우용정의 현지조사가 눈에 띄는 다른 사건은 없었다. 따라서 ‘우산도’가 ‘석도’로 바뀌게 된 과정에는 아마도 우용정의 보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칙령에서 돌섬은 석도로 표기되었지만 이런 호칭이 현지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을 리는 없다. 오히려 돌섬 내지 독섬이라는 호칭이 칙령 반포 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지 주민이 석도로 호칭하지 않았음은 그 후 심홍택이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는 것으로도 입증되는데, 심홍택의 ‘독도’ 호칭은 석도라는 호칭이 1900년 이후 줄곧 사용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독립신문이나 황성신문은 1890년대 말, 울릉도에서 행해지는 일본인에 의한 불법 벌목과 러시아 군함의 울릉도 기항 및 측량, 도감 배계주에 의한 일본에서의 재판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00년 7월에 느닷없이 통감부와 내부 간의 일을 보도하면서 칙령 41호에는 없는 거리관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분명하지 않다. 우용정의 기록에서 석도에 대한 언급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황성신문의 기사는 지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황성신문 기사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석도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황성신문 기사가 나온 시기를 전후하여 연관되는 다른 기록도 발굴함으로써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다.

<표 1> 울릉도의 거리관계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

기록자(출전)	동서	남북	둘레
통설(삼국사기, 강계고 외)			100리
김창윤	60~70리	70~80리	120리
장한상	60리	70리	150~60
한창국	50~60리	70~80리	
박세당			100여리
김정호	70여리	50여리	200 리
이규원			140~150리
황성신문*	60리	40리	200리
최남선	10km	9.5km	120리
행정지도	11.426km(28리)	10.73km(26리)	56km 내지 56.5km (약 180~183리)

* 황성신문에서 울릉도라고 말한 것은 아니나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보면 울릉도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